

「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탄소중립 기술지원」2차 공고 안내문

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「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탄소중립 기술지원」 사업이 다음과 같이 진행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1. 배경·목적

-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공정·설비 확인 등을 통해, 실질적 감축수단을 발굴·제시하여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의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
 - ※ 동 기술지원 사업 참여자는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지원 시 기점 부여

2. 기술지원 개요

- (지원대상) 「탄소중립기본법」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업체
 -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(NGMS)에 등록된 관리업체 내 사업장으로 관리업체당 최대 5개 사업장 이내 지원 가능
 - ※ 관리업체로 지정된 모든 사업장 지원 가능
 - 업체단위(제1호)*로 지정된 관리업체 내 다수(5개 이내)의 사업장에서 기술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, 각 사업장별로 신청서를 작성
 - * (「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」 제8조제2항제1호) 온실가스 배출량 총량이 5만 tCO₂eq/년 이상인 업체
- (지원규모) 총 20개 사업장(신청건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)
- (소요비용) 무료(참여업체 비용 부담 없음)
- (주요내용)
 - 온실가스 배출시설 목록 작성 및 원단위 조사·분석
 - 배출시설 사용현황 분석, 문제점 및 개선안 발굴
 - 현장 기술진단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시설의 감축기술 발굴
 - 온실가스 감축 예상량 산정, 시설투자 및 비용절감액 등 사업효과 산정
 -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및 탄소중립 방안 제시
 - 발굴된 온실가스 감축설비의 지원사업 신청서류 작성 지원

3. 지원방법

- [붙임1] 신청서를 작성하여 상생누리(www.winwinnuri.or.kr) 신청
※ 문의처(한국환경공단 배출권관리처 032-590-5681)
- (제출기한) 2026년 6월 26일 (금) 16시까지

4. 기술지원 대상 선정

- 업체별로 제출한 신청서를 평가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장 단위로 선정 및 별도 통보

< 기술지원 지원사업장 우선선정 기준 >

1. 중소기업 및 신규 지원업체 우선 지원
 - 1-1. 중견기업보다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
 - 1-2. 동일 기업규모 중 기존 지원업체보다 신규 신청업체를 우선 지원
2. 동일 기업규모 사업장 중 감축 잠재량이 큰 순으로 우선 지원
 - 2-1. 지원사업의 감축설비 여부와 감축효과(원단위) 큰 설비를 우선 지원
 - 2-2. 투자계획이 확정되었을 경우 우선 지원

5. 사후관리 등 기타

- 선정된 사업장(이하 “대상업체”)은 기술지원 관련 자료제공, 현장 조사 등에 협조하여야 함.
- 기술지원을 받은 관리업체는 결과 이행에 대한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함(3년간).

- 첨부 1. 사업 신청서 1식.
2. 지원대상 감축설비 1부. 끝.

【첨부1】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동의서

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탄소중립 기술지원 신청서				
기본정보	업체명		업체 코드	
	사업장명		사업장 코드	
	업종			
	기업구분	<input type="checkbox"/> 중소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중견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자발적참여업체		
	사업장 주소			
	담당자명		담당자부서/직책	
	이메일		담당자연락처	
신청정보	컨설팅 희망일	월단위로 기재(복수기재 가능, 7~10월 이내)	온실가스 배출량 (tCO2e/yr)	사업장 배출량
	주요공정·원료사용량			
감축설비정보	컨설팅 요청사항			
	1. 주요 배출시설, 용량, 대수, 내용연수, 배출량 등 설비정보 2. 사업장 현황 및 요청사항 등 기재 3.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도입이 필요한 설비(온실가스 감축 방법 설명) 4. 모니터링 설치 유무(계측기 설치 유무) 5. 해당 설비의 감축효과 기재(생산효율 대비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결과 등) 6. 그 외 컨설팅이 필요한 내용을 기재			
	투자계획 및 기타사항			
	1.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투자계획 2. 기타 참고사항 ※ 필수서류: 기업 구분을 확인할 수 있는중소기업, 중견기업 확인서 첨부서류로 제출			
	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참여여부	O / X		
위와 같이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탄소중립 기술지원을 신청합니다.				
2026. . .				
신청업체 (서명 또는 인)				
한국환경공단이사장 귀하				

[제1호 서식]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위탁·제공 동의서

□ 「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탄소중립 기술지원」 과 관련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 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위탁·제공을 하고자 합니다.

○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, 동의 여부를 체크,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제공사항은 지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.

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(필수)

[수집·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]

· 개인식별정보(성명, 연락처, 주소, 신상사항 등)

[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]

·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탄소중립 기술지원신청 및 지원에 이용

[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]

·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탄소중립 기술지원 완료 시까지 활용,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

동의함

동의하지 않음

□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·제공 동의(필수)

[위탁·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]

· 개인식별정보(성명, 연락처, 주소, 신상사항 등)

[개인정보를 위탁·제공 받는 자]

· (제공) 환경부, 한국환경공단

[개인정보를 위탁·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]

· (환경부, 한국환경공단)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탄소중립 기술지원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

[개인정보를 위탁·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]

·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

동의함

동의하지 않음

본인은 본 “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및 제3자 위탁·제공 동의서”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, 이에 동의합니다.

2026년 월 일

신청업체

(직인)

[제2호 서식] 정보활용 동의서

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
기업(신용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
① 수집·이용에 관한 사항

수집·이용목적	①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
	②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(만족도 조사)
수집·이용항목	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업 소재지, 업종, 매출액, 납입자본금, 자산총액, 부채총액, 영업이익, 당기순이익, 개업일·휴업일·폐업일, 전자계산서 발급액, 전자지급 거래액, 일반연구인력개발비, 현금영수증 결제금액, 신용카드 결제금액,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, 품목 번호, 총 신고가격, 목적지, 신고일
	②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목적의 지원이력 정보(전화번호, 이메일 등)
수집·이용기관	· 해당 보조사업 소관부처(집행기관 포함), 중소벤처기업부
수집·이용기간	·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기준 이전 3개년부터 사업 참여 이후 5년까지

② 기업(신용)정보의 파기

파기대상 정보	· 국세청 및 관세청 과세정보 ·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전화번호, 이메일 등
파기절차 및 방법	·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, 수집 및 이용기간 경과 시 30일 이내 지체 없이 파기 ·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

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기업정보를 수집·이용·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본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,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.

2026년 월 일
기업명 ○ ○ ○
대표자 ○ ○ ○ (인)

[첨부2] 지원설비 목록

지 원 설 비		지 원 범 위
① 탄소무배출설비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는 설비
공정 설비	② 폐에너지 회수이용 설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열(또는 폐압)을 회수하여 열 또는 에너지 원으로 활용하는 설비 예시 폐열회수 보일러, 폐압 터빈발전, 열교환기, 공정 부생가스 이용장치, 증기 재압축장치, 응축수 회수 등
	③ 폐기물 열분해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폐플라스틱 등의 폐기물을 열분해하여 연료화(가스, 유류)하기 위한 설비
	④ 탄소포집설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도록 포집하는 설비 ※ 조직경계 내의 포집·이송설비(이용설비는 제외)를 지원하며, 이송설비는 포집설비와 함께 신청할 경우에만 지원
	⑤ 연료 전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존 온실가스 다배출 연료를 저탄소 연료로 변경하기 위한 연료전환 설비 예시 보일러, 버너, 로, 건조설비 등 ※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연료전환 포함
	⑥ 물질 전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구온난화지수(GWP)가 높은 물질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低GWP 물질을 사용하는 설비(기기) ※ 제품군별 사용 제한 GWP를 만족하는 물질로 변경하는 경우
	⑦ 불소가스 저감설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자산업 등에서 열, 플라즈마 등을 활용하여 FC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설비
	⑧ 기타 공정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②~⑦에 해당하지 않으나 온실가스 배출공정의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설비 ※ 공정설비 개선으로 전기 사용량이 감소하는 경우는 ⑨~⑪으로 지원
	전력 · 연료 절감 설비	⑨ 인버터
⑩ 인버터 제어형압축기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체를 압축시켜 압력을 높이는 설비로 인버터에 의한 회전수 제어를 통해 전력을 절감하는 설비
⑪ 고효율 설비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존 설비의 개선을 통해 효율이 향상되거나 기존 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설비 예시 교반기, 모터, 버너, 보일러, 터보압축기, 펌프 등 ※ 보편화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(LED 설비 등), 단순 노후제품 교체 및 환경개선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
⑫ 기 타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인정되어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설비

※ 지원설비 중 태양광, 폐열 등을 이용한 발전설비 또는 열 생산설비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력량, 열사용량 등을 상한으로 지원하며, 생산된 전력 및 열은 소내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함(감축결과보고서 제출시 전기 발전량, 구매량, 판매량 등 증빙자료 제출)